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유 화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095
----------	------

발의년월일 : 2017. 11. 16.
발 의 자 : 유화 의원 등 11명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 등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산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안산시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마.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불임 1

4. 관계법령 발췌서: 불임 2

5. 예산수반사항 : 불임3 (비용추계서 첨부)

6.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불임4 (집행부검토의견서)

【붙임1】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장애인”이란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2.“장애인가족”이란 가족중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과 동거하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3.“장애인가족 지원”이라 함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 4.“장애인가족 지원센터”라 함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 2.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 3.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6.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지도, 감독)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안산시의회
임 안 자	시 의 원	유 화 대표발의 (행정 3578)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095
----------	------

제안년월일 : 2017. 12. 6.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장

□ 수정이유

- 조례의 위임근거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장애인 가족지원 조문으로 수정하고
- 장애인 가족을 「민법」에 규정된 가족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범위를 명확히 함

□ 주요골자

-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함 (안 제1조)
-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2조제2항)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 21조 및 제25조에 ”를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로 한다.

안 제2조제2항 “가족중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과 동거하는 형제.자매를 ”을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 ----- ----- ----- ----- ----- ----- ----- ----- ----- ----- ----- -----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이란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가족중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과 동거하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 “이라 함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라 함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p>제2조(정의) ----- -----.</p> <p>1. (원안과 같음)</p> <p>2.-----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 --.</p> <p>3·4 (원안과 같음)</p>